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25 September 2024
Version 7.0

1.0 정책

Rehiko와 계열사("Rehiko")는 독성 물질, 공기 배출, 폐수 방출, 폐기물 처리 및 배출과 같은 해당 제품 환경 법규를 포함한 해당 제품 구성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제품 또는 물질을 설계, 개발, 제조, 판매, 구매 또는 전 세계에 유통시키지 않는다.

2.0 목적

본 제품 환경 정책의 목적은 해당 제품 화학 물질과 제품 화학 성분의 규제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3.0 범위

제품 환경 정책 - 제한 물질 목록은 모든 **Rehiko** 사업에 의하거나 **Rehiko** 사업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에서 설계, 제조 또는 구매하는 모든 **Rehiko** 브랜드 제품과 물질에 적용되며, 이는 하위 부품, 부품, 물질, 성분, 배터리, 물품과 포장재를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정책의 범위 외에는 이동 오염원과 고정 오염원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 및 도금 사양과 같은 기타 물질 기반 사양이 포함된다.

4.0 책임

제품 준수 팀의 책임

Rehiko 팀은 필요 시 본 정책을 관리, 집행 및 수정할 수 있는 법적 및 제품 준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Rehiko의 책임

Rehiko 사업체와 제휴사들은 아래의 책임을 다한다.

- 모든 물질 사양이 규제 요건을 충족할 것
- 승인된 공급자만을 사용할 것
- 모든 공급자가 사전에 계약 요건을 충족할 것

공급자의 책임

공급자는 본 정책과 관할 법률을 준수한다.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직접 물질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물질에 대한 완전한 공개 (섹션 7.0 참조)
- 공급자 REACH SVHC 및 제한 물질 목록 신고 (섹션 8.1 참조)
- 공급자 RoHS 신고 (섹션 8.2 신고서 참조. 부록 A의 최소 요건을 충족할 것)
- PFAS 공급업체 신고서 (섹션 8.7 참조)
- 공급자 캘리포니아 주 발의 65에 대한 신고 (섹션 8.8 참조)
- 미국 TSCA 섹션 6에 대한 공급업체 신고서 (섹션 8.8 참조)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요청 시, 공급 업체는 다음 사항도 또한 제공해야 한다:

- EU SCIP 데이터베이스 제출을 준수하는 데 요구되는 추가 정보
- 포름알데히드 또는 방사선 배출에 대한 아래 규제 한도 시험 보고
- 물질, 혼합물 또는 배터리 안전성 데이터 기록표
- 적합성 신고 (EU, UK, 호주, 등)
- 포장 소재 및 중량
- Rehiko 제품 준수 의무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타 시험 결과 등

Rehiko 를 대신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제 3 자가 공급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공급자는 Rehiko.의 허가증을 받은 정보 수집 포털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공급자는 모든 관할 규제를 인지하고 공급한 물질이 새롭게 규제되는 물질을 포함한 경우 Rehiko 에 즉시 고지한다.

공급자는 물질 성분을 포함하여 물질의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부품, 부품, 물질, 성분, 배터리, 물품 및 포장재의 설계를 수정한 경우 Rehiko 에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5.0 부속 서류

- 부속 A - 공급자 신고 최소 충족 요건
- 부속 B - EU/UK RoHS 신고 서식
- 부속 C - EU REACH 신고 서식
- 부속 D - 캘리포니아 법안 65 신고서 템플릿
- 부속 E - 미국 TSCA 섹션 6 신고서 템플릿
- 부속 F - PFAS 신고서 템플릿
- 부속 G - 포름알데히드 증명 요건

6.0 정의 및 약어

물품	공정에 있어 그 기능을 화학 구성보다 더 특별한 모양, 표면 또는 설계를 필요로 하는 대상 (EU REACH 제 3 항 과 UK REACH 의 정의)
배터리	화학 에너지의 직접적인 변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의 모든 공급원과 1 차 전지(충전 불가 전지)를 구성하는 하나 이상 및 2 차 전지(충전 가능 전지)를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모든 공급원. (EU 배터리 지침에 의한 정의)
후보군 목록	EU REACH 규제에 의해 고위험군 물질(SVHC)로 분류되어 승인을 요하는 물질 목록.
화학 물질 추출 서비스 (CAS)와 화학 물질 추출 서비스 등록 번호 (CAS 번호).	CAS 는 미국화학학회에 속한 부처로 화학 물질과 그와 관련한 과학을 연구한다. CAS 번호는 각 화학 물질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로 공개 과학 학술 문헌에 표기된다.
복합물	하나 를 초과하는 물품의 결합 또는 다양한 조합으로 복합 물체를 이룬다. (ECHA 의 "물품 내 물질 요건 지침"에 의한 정의)
EU	유럽연합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유럽 지역 번호 (EC 번호)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의 규제 목적으로 분류된 물질 고유 식별자
동종 물질	나사를 풀거나, 절단, 분쇄, 뿜음 및 마찰 공정과 같은 기계적 작용으로 해체 또는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 구성 또는 물질 조합에 의한 물질. (RoHS 2011/65/EU 정의)
국제 생활 미래 연구원 (ILFI) 위험물 목록	국제 생활 미래 연구원의 정의에 따라 건축 산업에서 널리 퍼져 있는 "동종 고위험" 물질.
물질 사양	성분, 하위 부품 또는 제품의 화학 성분의 설계 및 화학 물질과 관련된 Rehiko 의 정식 요건.
혼합물	두 개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 또는 솔루션. (EU REACH 제 3 항과 UK REACH 의 정의)
포장재	물품 공정 원재료의 방지, 보호, 조작, 인도 그리고 제시에 사용되는 제품.
과불화화합물(PFAS)	인접한 탄소 원자가 최소 2 개 이상 포함된 화학물질로, 탄소 하나는 완전히 불소화되고 다른 탄소는 부분적으로만 불소화된 물질입니다. (EPA 정의)
제품	제조 및 브랜드 제품을 포함한 최종 하위 부품 또는 서비스 부품. 제품 화학 물질을 준수의 목적으로, 제품은 포장재와 별도로 간주한다.
금지 사항	어떠한 농도로도 존재해서는 안 됨.
REACH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보고 요함	현재 관할 규제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명시된 해당 최대 농도 한계치를 초과한 경우 Rehiko 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한 사항	지정된 최대 농도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특정 제품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RoHS	전기 및 전자 장비에 대한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
SCIP	SCIP 는 복합물(제품) 등의 물품 위험 물질 정보에 대한 유럽 연합의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며 폐기물 지침에 의해 수립되었다. EU REACH SVHC 를 포함한 부품과 제품은 유럽 연합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물질	자연 상태 또는 제조 과정에서 획득한 화학 성분과 그 혼합물. (EU REACH 제 3 항과 UK REACH 의 정의)
고위험군 물질 (SVHC)	EU 내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또는 화학 물질군의 부품)은 REACH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 EU REACH 규제의 "후보군 목록"과 같이 언급된다. (EU REACH 에 의한 정의)
TSCA	유해물질관리법
영국	영국
미국	미국
현재한 복합물	간단한 복합물에 물품이 추가된 조합. (ECHA 의 "물품 내 물질 요건 지침"에 의한 정의)

7.0 물질에 대한 완전한 공개(FMD)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Rehiko 는 고객과 제품 투명성 소통에 더불어 각각 새로운 제한 사항을 최소화하고 주의가 필요한 물질에 대한 사전 대책을 관리하기 위해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항목의 성분 정보를 수집한다. Rehiko 는 다음을 포함한 "물질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수집한다.

- Rehiko 가 수집하는 모든 물질의 상품명, 공급자명, 그리고 각 물질의 농도를 포함한 완전한 화학 성분.
- 요청 시, 공급자는 증명, 준수 신고, 그리고 준수 입증 또는 증명을 위한 시험 데이터에 관한 추가 서류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 공급자는 물질 성분에 대한 추후 변경 예정 사항을 Rehiko 에 고지한다.

"물질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식을 인정한다. "물질에 대한 완전한 공개"의 통상적인 신장 가능 마크업 언어(XML) 서식으로 IPC-1752A, IPC-1754, 그리고 IEC 62474 를 포함한다.

FMD 를 제공함으로써, Rehiko 는 공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대신 새로운 제한 물질에 대한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공급자가 기존 물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8.0 제한/ 통제 / 보고를 요하는 물질 규제

Rehiko 는 다음 규제를 준수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준수하는 제품 또는 물질을 전 세계적으로 설계, 개발, 제조, 판매, 구매 또는 유통하지 않는다.

8.1 EU REACH 규제 (1907/2006) 및 UK REACH

EU REACH 규제(1907/2006)의 표제는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대한 규제(EC) 번호 1907/2006" 이다. EU REACH 는 물질 자체와 물질로 이루어진 "물품"(정의 참조)에 적용된다.

<https://echa.europa.eu/regulations/reach/understanding-reach>

공급자는 Rehiko 에 제공하는 물질 중 EU REACH 규제의 최신본에서 표시하는 EU REACH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21 년 1 월 부로, UK REACH 규제가 발효된다. 공급자는 EU 와 UK REACH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https://www.hse.gov.uk/reach/index.htm>

EU 와 UK REACH 규제는 수시로 개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공급자는 개정되는 요건들을 주시하고 Rehiko 에 공급하는 물질에 관해 개정되는 정보에 대해 규제가 개정될 때마다 고지한다. 현재 EU REACH 에 의해 규제되는 물질 목록은 유럽 화학청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하단 링크)

REACH 규제 = "화학 물질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 EU REACH 제한 목록 - 부속 17:
 - <https://echa.europa.eu/substances-restricted-under-reach>
 - "제한 목록"의 물질은 특정 적용 사항에 한해 제한된다. 공급자가 이 목록의 물질을 활용할 시, 예를 들어 Pb(납), 공급자는 REACH 부속 17 항목을 검토하고 Rehiko 에 공급하는 항목에 그 사용이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 EU REACH 승인 목록 - 부속 14:
 - <https://echa.europa.eu/authorisation-list>
 - Rehiko 에 물질 또는 혼합물을 유럽 경제 지역(EEA) 또는 UK 내에 사용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제 5.0 조의 정의 참조)는 Rehiko 에 REACH 승인 목록(부속 14)의 물질 포함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 목록은 Rehiko 에 공급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EU REACH 승인 후보군 목록 - "고위험군 물질"(SVHC)
 -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
 - SVHC 는 REACH 규제 하 "승인 후보군" 목록에 포함된다. 이러한 물질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더라도, 기타 요건들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공급자들은 무게 단위로 0.1% 농도 이상의 후보군 목록의 물질을 활용할 시, Rehiko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물질 농도 한계치 0.1%(무게 단위)는 각 물품(제 5.0 조의 정의 참조) 또는 공급되는 물질마다 적용된다. "복합물" 또는 하나 이상의 물품으로 결합 또는 조합으로 이루어진 "현재한 복합물"에 대하여 이 한계치가 각각의 물품에 적용된다.

2021 년 1 월 5 일 부로, 개정된 EU 의 "폐기물 기본 지침"(지침(EU) 2018/851)에 의거하여, 후보군 목록 물질을 포함하는 물품을 생산, 수입 또는 공급하는 회사는 EU 시장에 출시하는 이러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SCIP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품은 EU 에서 생산하거나 EU 외 국가에서 수입한 것일 수 있다. EU 에 위치한 Rehiko 에 부품을 조달하는 공급자는 EU REACH SVHC 를 포함하는 항목을 구매한 것에 대한 SCIP 등록 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전 세계의 모든 공급자는 Rehiko 가 사업을 영위하는 EU 시장에서 Rehiko 가 제품에 관한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https://echa.europa.eu/scip>

8.2 EU RoHS 지침(2011/65/EU) 및 UK RoHS 규제(2012 No. 3032) - " 위험 물질 제한"

EU RoHS 지침의 정식 명칭은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특정 위험 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이다.

RoHS 는 지침 범위 내의 최종 제품의 모든 성분, 하위 부품, 그리고 제품에 적용된다. 이는 성분, 하위 부품, 또는 제품이 그 자체로 지침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예를 들어, 개스킷 또는 잠금장치). Rehiko 는 구매 항목이 "전자 장비"와 관련되지 않아도 구매한 모든 물질에 대한 RoHS 정보를 요한다.

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rohs_eee/legis_en.htm

공급자는, Rehiko 에 공급한 물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완전한 공개"(제 7.0 조 참조)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EU RoHS 지침(2011/65/EU 의 후속 개정뿐 아니라, 제한 물질 목록에 추가된 물질인 2015/863 을 포함)의 최신본에 따른 물질 상태를 반영한 "결여 신고"(부속 A 와 B 참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한 물질의 RoHS 한계치는 "완제품" 수준(제 6.0 조의 정의 참조)이 아닌 신고된 항목의 "동종" 수준에 의하여 평가된다. RoHS 신고는 반드시 RoHS 표시 물질의 사용이 허용된 모든 RoHS 면제의 승인 공개를 포함하여야 한다.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특정 위험 물질 사용 규제(2012 No. 3032) - 별칭 UK RoHS 는 EU RoHS 개작 2011/65/EU 의 UK 치환이다. 최근 정비된 요건과 EU RoHS 신고는 UK RoHS 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2021 년 1 월부터 범주에 포함되는 제품에 대한 UK 적합성 평가 (UKCA) 제품 증명의 뒷받침에 활용된다. <https://www.gov.uk/guidance/rohs-compliance-and-guidance>

Rehlko 가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국가 및 주에서도 또한 RoHS 와 유사한 제한을 시행했다. 공급 업체는 이런 유사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시장에 관계없이 EU RoHS 신고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몇몇 추가 관심 시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중국	GB/T-26573
EAEU / 러시아	TR CU 037/2016
인도	인도 전자 제품 환경 관리
일본	J-MOSS(일본 특정물질 표시) 또는 일본 RoHS(JIS C 0950)
한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사우디 아라비아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 기술 지침, 2021 년 9 월
싱가포르	SG-RoHS
대만	CNS 15633
태국	TIS 2368-2551, 2008
터키	터키 RoHS
우크라이나	법령 번호 139
아랍에미리트(UAE)	내각 결정 번호 2017 년 10 번
베트남	세부 규정 30/2011/TT-BCT

8.3 포름알데히드

모든 복합 목재 제품 공급자는 [EPA 유해 물질 규제법\(TSCA\) 제 6 호](#), [캐나다 복합 목재 제품 포름알데히드 배출 규제 \(SOR/2021-148\)](#) 및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 공기 중 독성 통제 조치\(ATCM\)](#)의 영향을 받으며 Rehlko 공급자 관리 플랫폼의 공급자 등록 과정에서 상기 세 개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 소매업자, 패널 생산자, 제작자, 제 3 자 증명자 그리고 인증 기관에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속 F 참조.

8.4 공급자 방사선 요건

구매한 모든 물질은 7 급 방사성 물질과 같은 위험 물질에 대한 정부 차원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Rehlko 의 공정과 제품의 방사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되는 재활용 파편을 포함하여 공급받는 모든 금속성 물질과 성분은 전리방사선을 생산 장소의 바탕 준위를 넘어선 0.05 mrem/hr(0.5 uSv/hr) 이상으로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Rehlko 가 수급한 어떠한 물질과 성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경우, 공급자는 최소한의 책임으로 적절히 폐기하고 공급자의 비용으로 Rehlko 에 즉시 안전한 대체품을 제공한다.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8.5 살균성 제품

Rehiko가 구매한 일부 물품과 물질은 살균 성질 물질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질은 살충제, 살균제, 향균 물질 또는 향균제라 지칭한다. Rehiko가 제품을 판매하는 다수 국가에서는 이러한 물질 자체와 기타 제품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등록 및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Rehiko는 공급자가 제품이 판매될 시장에 등록 및 승인된 물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 외에, Rehiko는 공급자에게 살균성 제품의 사용에 관한 정보와 등록 및 승인에 대한 내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종류의 규제를 시행하는 Rehiko의 주요 시장은 다음과 같다.

규제	내용	링크
캐나다 해충 방제 제품 법률 (S.C. 2002, c.28)	살충제 유통, 판매 및 사용에 관한 국내 규제 제공. 살생물제를 포함하여 캐나다 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모든 살충제는 PMRA에 의해 등록(허가)되어야 한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protecting-your-health-environment/pest-control-products-acts-and-regulations-en.html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EU 살균 성질 규제 (BPR) (규제 (EU) 528/2012)	모든 살균성 제품은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유럽 화학청(ECH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균성 제품에 포함된 작용 물질은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한다.	https://echa.europa.eu/regulations/biocidal-products-regulation/understanding-bpr
미국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 (FIFRA) 7 U.S.C. §136 et seq. (1996)	살충제 유통,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연방 규제 제공. 미국 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모든 살충제는 EPA에 의해 등록(허가)되어야 한다.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summary-federal-insecticide-fungicide-and-rodenticide-act

8.6 유약과 유약 처리된 세라믹 물질 제한

Rehlko가 구매한 물질에 납과 카드뮴 그리고 납과 카드뮴의 화합물을 유약을 입히거나, 세라믹 또는 이미 유약을 입힌 제품에 덧입히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는 세라믹 위생 도기, 부엌의 싱크대 그리고 세라믹 타일에도 적용된다.

8.7 과불화화합물(PFAS)

과불화화합물(PFAS)은 과불화옥탄산(PFOA) 및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을 비롯한 수천 가지 물질군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PFAS에 대한 철저한 검토 조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조치나 제안된 조치로 인해 일부 관할권은 PFAS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이나 요건이 부과되는 대상입니다.

Rehlko는 현재 및 향후 규제, 책무 및/또는 비즈니스 요건과 관련된 실사를 위한 PFAS 정보를 필요로 하며 지리적 금지 사항이나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모든 출처로부터 이 정보를 얻습니다. PFAS 물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목록은 아래 기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정의된 PFAS 물질의 목록은 아래 기관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 인벤토리
 - <https://www.epa.gov/tsca-inventory/how-access-tsca-inventory>
- EU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REACH) 레지스트리
 - <https://echa.europa.eu/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PFA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 <https://www.oecd.org/chemicalsafety/risk-management/global-database-of-per-and-polyfluoroalkyl-substances.xlsx>

8.8 기타 위험 물질 규제

기타 "주의 물질"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공급자는 Rehlko의 제품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검토에 협조해야 한다. 본 사항에 기재된 대로, 구체적인 물질에 대해 제한되는 한편 일부 규제는 특정 물질 존재의 고지만 필요로 한다.

규제	내용	링크
----	----	----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1986 년 캘리포니아 식수 안전과 독성 시행 법률 (발의 65)	고지 요함. 기재된 화학 물질을 공개하기 전에 사업 상 "명료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필요로 한다.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수은 규제를 포함하는 캐나다 제품 (SOR/2014-254)	제한이 요구됨. 제조되거나 캐나다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 유형에 허용되는 수은 양을 제한한다.	https://gazette.gc.ca/rp-pr/p2/2014/2014-11-19/html/sor-dors254-eng.html
EU 배터리 지침 (2006/66/EC)	제한 요함. 배터리 위험 물질 (수은, 카드뮴) 제한 포함	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batteries/index.htm
EU 식품 접촉 물질 규제 (1935/2004/EC)	제한 요함. 부엌 싱크대를 포함하여 식품과 접촉하는 세라믹 제품은 지침 84/500/EEC(납과 카드뮴)의 범위에 포함된다.	https://ec.europa.eu/food/safety/chemical_safety/food_contact_materials_en
EU 포장재 지침 (94/62/EC)	제한 요함. 포장재 물질에 대한 제한 포함	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packaging/legis.htm
유럽 오존 파괴 물질 (ODS) (규제 (EC) 1005/2009)	제한 요함.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 파괴 물질(ODS) 사용 금지 / 제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LEGISUM:ev0021
유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규제 (EC) 850/2004)	제한 요함. UNECE 의정서 및 스톡홀름 회의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 사용 금지 / 제한	http://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international_conventions/index_en.htm
미국 독성 물질 관리법(TSCA) 섹션 6	제한이 요구됨. 석면, 폴리염소화 비페닐(PCB), 잔류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 물질(PBT) 5 종 및 기타 아크릴아마이드의 사용을 금지/제한합니다.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regulation-chemicals-under-section-6a-toxic-substances

9.0 위험 물질 준수 및 고지 추가 요건

Rehlko 는 현재 제한되거나 미래에 규제될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 및 환경에 주의를 요하는 물질의 존재를 긴밀하게 주시한다. 공급자는 아래 명시되는 특정 물질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기존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공급하는 항목 중 "보고 요함"으로 표시된 물질을 Rehlko 에 고지한다.

모든 물질은 금지, 특정 한계치 **제한** 또는 **보고 요함**(제한 사항은 아니지만, 공급자는 Rehlko 에 이러한 물질의 존재에 대해 고지하여야 함)으로 분류되어 표기된다.

물질	CAS 등록 번호	통제 수준
삼산화 안티몬	1309-64-4	보고 요함
갈색, 파란색, 흰색 석면을 포함한 석면 및 트레몰라이트 <i>Rehlko 에 공급된 물질이 석면을 포함하지 않거나 석면에 노출되지 않음</i>	다중	금지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117-81-7	제한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비스페놀 A(BPA) –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80-05-7	보고 요함
브롬화 난연제	다중	보고 요함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85-68-7	제한
카드뮴 및 그 화합물	7440-43-9 및 기타 등	제한
염화 탄화수소	다수	금지
크롬 VI 화합물	다중	제한
코발트 금속	7440-48-4	보고 요함
시안화물 및 그 화합물	57-12-5	제한
삼산화비소	1327-53-3	제한
디부틸프탈레이트(DBP)	84-74-2	제한
다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84-69-5	제한
불소 온실가스(PFC, SF6, HFC)	다수	금지
할로겐화 물질	다중	보고 요함
ILFI 위험물 목록 및 경계 대상 물질(제 6.0 조 정의) https://living-future.org/declare/declare-about/red-list 참조	다중	보고 요함
납 및 그 화합물	7439-92-1 및 기타 등	제한
수은 및 그 화합물	7439-97-6 및 기타 등	제한
니켈 및 그 화합물	7440-02-0 및 기타 등	보고 요함
과염소산염	다중	제한
페놀, 이소프로필화 인산염(3:1)(PIP(3:1))	68937-41-7	금지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다중	제한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DecaBDE 포함)	다중	제한
폴리염화비페닐(PCB)	1336-36-3, 11097-69-1, 2437-79-8, 11096-82-5, 53469-21-9	금지
과불화화합물 (PFOA 및 PFOS 를 포함한 PFAS)	335-67-1, 1763-23-1 10,000 개 이상의 PFAS 물질이 있음 - 사용 시 Rehlko 에게 고지 요함	제한 또는 보고 요함
폴리염화나프탈렌즈(PCN)	다수, 예를 들어 70776-3-3	제한
폴리염화비닐(PVC)	9002-86-2	보고 요함
짧은 체인 및 중간 체인 염소 처리 파라핀 (알카네스 C10-13 및 C14-17, 클로로)	85535-84-8, 85535-85-9	제한
실리콘	다중	보고 요함
테트라브로모 비스페놀 A(TBBPA)	79-94-7	보고 요함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연혁

버전	날짜	내용
1.0	2019년 5월 13일	Cally Edgren 의 최초 초안 1. Kohler Co. 제품 환경 요건 수립 2. 제품 화학 물질 및 성분 규제 및 위험 물질 포함 3. 공급자의 요구 명시 4. 서류 요건 명시
2.0	2019년 9월 6일	Cally Edgren, Michael Read & Chelsie Warner 의 개정 초안 1. 본 정책의 영향이 미치는 Kohler Co.의 기능 분야 개선 2. 본 정책 범위 단위별 정의 3. 부속 F 의 REACH SVHC 목록 2019년 7월자 참조 날짜 업데이트 4. Kohler Co. 다양한 사업 그룹 차원에서 상이하게 관리하므로 품질 책임 사항 삭제 5. 최종 법적 검토 수정 반영
3.0	2020년 4월 24일	Cally Edgren 개정 1. 포름알데히드 및 방사선 요건, 제 3 자가 수집하는 성분 데이터 그리고 설계 변경 관리에 관한 고지에 대한 요건을 제 4.0 조 공급자의 책임 명시 2. 공급자의 방사선 요건 명시에 따른 나머지 조의 번호 재부여 3. 제 7.0 조 물질에 대한 완전한 공개 요건 추가 4. 제 8.0 조에 RoHS 물질 추가 5. 제 8.5 조에 미국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IFRA) 추가 6. 제 9.0 조에 EU "분쟁 광물" 요건 참조 추가 7. EU 에 UK 참조 추가 8. 부속 A 대신 "물질에 대한 완전한 공개" 정의 명시 9. 포름알데히드 요건에 관한 단독 조 생성 및 세부 요건에 관한 부속 신설 10. 부속 A, E 그리고 F 삭제에 따른 재분류 11. 명시를 위한 기타 사소한 요점
4.0	2021년 4월 6일	Cally Edgren 개정 1. 제 6.0 조 정의 및 제 8.1 조 EU REACH 에 EU REACH SVHC 보고 관련 EU SCIP 데이터베이스 참조 추가. 2. 제 8.5 조 "살균성 제품" 신설 및 EU 살균성 제품 규제와 US FIFRA 에서 승인한 물질 사용 참조 추가. 캐나다 해충 방제 제품 법률 준수 요건 추가. 모든 다음 조 번호 재부여 3. "유약 물질 제한"에 관한 제 8.6 조 신설. 4. 제 8.7 조 "추가 위험 물질 규제"에 EU 식품 접촉 물질 규제 추가. 5. 새로운 US TSCA 금지로 인해 제 9.0 조 페놀, 이소프로필화 인산염(3:1)을 추가. 6. UK 의 EU 탈퇴 과도기에 따른 EU 요건과 함께 UK 요건 추가. 7. 필요 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동의를 활용하기 위한 EU REACH 및 CA 발의안 65 서식에 대한 부속 C & D 추가. 포름알데히드 요건 부속 E 로 이항.
5.0	2022년 3월 21일	Cally Edgren 의 개정판.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매된 모든 직접 재료에 요구되는 신고과 요청 시에만 요구될 수 있는 신고를 구분하기 위해 "공급 업체 책임"을 분리했다. 2. EU/UK 이외의 다른 주요 RoHS 규정에 대한 참조를 추가했다. 3. 새로운 캐나다 요구 사항에 포름알데히드 참조 사항을 추가했다.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4. 캐나다 제한에 제품 내 수는 참조 사항을 추가했다.
5. US TSCA 섹션 6(h) PBT 에 대한 참조 및 신고 템플릿을 추가했다.

- 6.0 2024 년 2 월 12 일 Danielle Yaeger 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미국 TSCA 참조 사항 및 신고서에 모든 섹션 6 물질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2. 유럽/영국 이외의 추가 주요 RoHS 규정에 대한 참조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ESG 문서에 기재할 분쟁광물이 제거되었습니다.
 4. 섹션 8.7 에 PFAS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유해 물질 규정"을 아래의 섹션 8.8 로 이동했습니다.
 5. PFAS 템플릿에 부록 F 를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동의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름알데히드 요구 사항을 부록 G 로 이동시켰습니다.
 6. "요청 시 공급업체가 제공해야 함" 항목에 포장재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 7.0 2024 년 9 월 25 일 Eric Raquet 의 개정판.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랜드를 Rehiko 이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2. Kohler 에 대한 언급을 삭제합니다.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부속 A - 공급자 신고 요건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적합성 증명"(CoC) 신고는 준수를 뒷받침하는 기술 문서로 적합한 문서이다. 적합성 증명에 대한 지침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의 부록을 예시로 한다.

성분 및 공급자 리스크에 따라, 조화로운 표준 IEC 63000:2016 / EN IEC 63000:2018 "위험 물질 제한에 따른 전기 및 전자 제품 평가를 위한 기술 문서"에 의거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Rehiko 가 "물질에 대한 완전한 공개"(FMD) 및 분석 시험 보고서를 포함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자 신고 "적합성 증명"은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해당 신고의 주제인 규정에 대한 참조:
 - EU RoHS: EU RoHS 지침 2011/65/EU 및 영국 RoHS 2012, 3032 번.
 - 신고에는 또한 위원회 위임 지침(EU) 2015/863("프탈레이트")에 대한 참조 및 EU RoHS 지침 부록 II 에 나열된 물질을 변경하는 모든 후속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화학물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관한 2006 년 12 월 18 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C) 번호 1907/2006 에 대한 참조.
 - 캘리포니아 법안 65: 1986 년의 안전한 식수 및 독성 시행법에 대한 참조.
 - 미국 TSCA: 실제 법률의 제목에 대한 참고 사항, "독성물질 관리법" 섹션 6 의 "화학물질 규제"
 - PFAS: 실제 법률 제목에 대한 참고 사항, "PFAS"
- 부품 번호 및 Rehiko 에 제공한 항목(들) 내용.
 - 신고서는 구체적인 물질, 부품, 및 하위 부품, 또는 구체적인 물품, 부품 및 하위 부품의 범위를 포함한다.
 - 다수의 부품을 표 형식을 사용하여 동일한 증명서에 나열하여도 된다.
- 해당 신고의 주제가 되는 규정으로부터 나열된 물질이 상기 나열된 임계값을 초과하여 구매한 자재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언급하는 신고.
 - 특정 목록에 나열된 물질 및 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EU/UK RoHS 의 경우, 물질이 허용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EU RoHS 지침의 부록 III 또는 IV 로부터 허용 가능한 (및 만료되지 않은) 적용 면제가 신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의 경우, 물질이 0.1% 기준치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신고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 미국 TSCA 섹션 6 에 따라 허용된 수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존재하고 해당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고서에 해당 물질을 명시해야 합니다.
 - PFAS 의 경우 물질이 존재한다면 신고서에 그 농도 및 총 중량과 함께 해당 물질이 부품/제품에서 발견되는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승인된 회사 대표자의 서명.(이름, 연락처 상세, 직함 포함).
- 신고서 발행 일자.
 - 신고는 해당 날짜 현재 "관심 물질" 목록을 포함하여, 해당 날짜 현재 유효한 해당 규정을 다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 신고 날짜 이후에 해당 규정이 변경된 경우, Rehiko 는 해당 신고를 "오래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고 새 신고를 해야한다.

- 신고서는 회사 공문 형식(회사명, 주소, 번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신고서는 영문 또는 EU 회원국이 승인한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공급 업체는 해당 표의 정보가 영어 또는 유럽 연합의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한, Rehiko 가 제공하는 번역의 부록 B – F 에서 사용 가능한 Rehiko 형식 신고서를 활용하는 옵션을 가진다.

기타 정보 제안:

- 제한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품에 대한 대안책 제안.
- 부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즉, 제 3 자 물질 시험 또는 생산 및 제조 과정 평가).
 - 분석 시험을 시행한 경우(IEC/EN 62321 준수 권고), 일자가 기입된 결과 복사본을 서류에 포함할 것.

분석 시험 결과

특정 성분 또는 원자재에 대해 IEC 62321:2008 에 서술된 방법으로 시행하거나 참조하는 형식으로 시행한 분석 시험 결과 및 후속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다.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부속 B - EU/UK RoHS 신고 서식

아래는 EU/UK RoHS 신고의 예시이다. 공급자가 반드시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에 포함된 정보와 구체적인 규제 및 개정판 2015/863 에 대한 참조는 포함하여야 한다. 다수의 부품을 표 형식을 사용하여 동일한 증명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회사 레터헤드 삽입)

회사명:

날짜:

EU/UK RoHS 준수 신고

아래 표는 유럽 연합 지침 2011/65/EU - 위험 물질 제한(RoHS) 지침과 2015/863 개정 부속 II 을 포함한 그 후속 개정,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특정 위험 물질 사용에 대한 제한 요건- UK RoHS 라 지침-을 준용하여 부품의 상태를 표시한다.

수량 한정은 동종 물질 수준에서 계산된다.

1. 납 (Pb) – 0.1%(1,000ppm)
2. 수은 (Hg) – 0.1%(1,000ppm)
3. 카드뮴 (Cd) – 0.01%(100ppm) 기타 제한 물질 한계치 보다 낮음
4. 헥사발렌트 크로뮴(Cr VI) – 0.1%(1,000ppm)
5.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 0.1%(1,000ppm)
6.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 0.1%(1,000ppm)
7. 비스 (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 0.1%(1,000ppm)
8.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 0.1%(1,000ppm)
9.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0.1%(1,000ppm)
10. 다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 0.1%(1,000ppm)

물질 양이 허용 한계치를 초과하고 RoHS 면제가 적용될 경우, 하기 RoHS 준수 부품 목록에 적절한 EU RoHS 면제가 반드시 나열되어야 한다.

만약 부품이 하나 이상의 RoHS 목록 물질을 포함한 경우, 각각 다른 줄에 나열할 것.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시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품 번호	내용	RoHS 상태	RoHS 물질 이름 (있을 시)	동종 농도	사용된 EU RoHS 면제
A2X33	Plastic Housing	Compliant	NONE		
SNJ401	Aluminum Mounting Frame	Compliant by use of	Lead	0.2%	6(b)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exemption			
PLJ804	Standoff Insulator	Not Compliant	Lead	4.1%	N/A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이름(정자체): _____

서명: _____

제목: _____

날짜: _____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부속 C - EU REACH 신고 서식

아래는 EU REACH 신고의 예시이다. 공급자가 반드시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에 표시된 정보와 가장 최신 EU REACH SVHC 목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수의 부품을 표 형식을 사용하여 동일한 증명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회사 레터헤드 삽입)

회사명:

날짜:

유럽 연합 REACH 후보군 목록 물질 신고
 (고위험군 물질 - SVHC)

아래 표는 유럽 연합 규제(EC) 1907/2006 - 유럽 화학청(ECHA)에서 발행 및 업데이트 되는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REACH)" "승인 후보군 목록"(고위험군 물질, SVHC 라 지칭)을 준용하여 부품의 상태를 표시한다.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

EU REACH 의 제 33(1)조 에 따라, (규제에 의해 정의된) 조항 수준에서 무게단위 0.1% 이상의 모든 SVHC 가 있는 경우, 물품 수령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상기 참조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후보군 목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부품이 하나 이상의 SVHC 를 포함한 경우, 각각 다른 줄에 나열할 것.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시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품 번호	내용	SVHC 이름 (있을 시)	CAS 번호 또는 EC 번호	농도 (무게 단위 %)	EU SCIP 데이터베이스 번호 (제출 시)
A2X33	Plastic Housing	NONE			
SNJ401	Aluminum Mounting Frame	Lead	7439-92-1	0.2%	4a8e4a91-733z-5bje-m01
PLJ804	Standoff Insulator	Lead	7439-92-1	4.1%	21jc525-e096-4kl1230

Rehiko 가 수급하는 어떠한 제품도 EU REACH 부속 XVII, "제한 목록"에 의해 제한되는 물질의 허용 한계치 이상의 또는 규제에 의해 적용이 금지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이름(정자체): _____

서명: _____

제목: _____

날짜: _____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부속 D - 캘리포니아 주 발의 65 신고 서식

아래는 CA 발의 65 물질 신고의 예시이다. 공급자가 반드시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에 표시된 정보와 가장 최신의 CA 발의 65 물질 목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수의 부품을 표 형식을 사용하여 동일한 증명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회사 레터헤드 삽입)

회사명: _____

날짜: _____

캘리포니아 주 발의 65 물질 목록 신고 (식수 안전과 독성 시행 법률)

아래 표는 캘리포니아 주 환경 건강 유해성 평가국(OEHHA)에서 발행 및 업데이트하는 1986 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식수 안전과 독성 시행 법률(발의 65)에 의거하여 부품의 상태를 표시한다.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이 신고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상기 참조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목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부품이 하나 이상의 목록 물질을 포함한 경우, 각각 다른 줄에 나열할 것.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시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품 번호	내용	CA 발의 65 목록 물질명 (있을 시)	CAS 번호	농도 (무게 단위 %)
A2X33	Plastic Housing	NONE		
SNJ401	Aluminum Mounting Frame	Lead	7439-92-1	0.2%
PLJ804	Standoff Insulator	Lead	7439-92-1	4.1%
PLJ804	Standoff Insulator	Styrene	100-42-5	3.2%

이름(정자체): _____ 서명: _____

제목: _____ 날짜: _____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부속 E – 미국 TSCA 섹션 6 신고서 템플릿

아래는 섹션 6에 대한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 물질 신고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공급 업체가 이 정확한 템플릿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표에 표시된 정보가 요구된다. 표 형식을 사용하여 동일한 신고에 여러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회사 머리말 문구 기입)

회사명:

날짜:

독성 물질 관리법(TSCA) 물질 신고

아래 표는 미국 독성 물질 관리법(TSCA)의 다음 섹션과 관련된 부분 상태를 나타낸다:

제목 I – 독성 물질 관리
섹션 6

일반적인 용도를 포함한 규제 물질 목록은 미국 환경 보호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regulation-chemicals-under-section-6a-toxic-substances>

(이러한 물질이 포함된 처리된 물품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 및 물질군은 미국 상거래에서 유통이 제한됩니다. 이 신고에 포함되는 물질은 다음을 포함한다:

- 석면
- 페인트에 사용되는 경우 납
- 폴리염화비페닐(PCB)
- 다이옥신
-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CFC, 오존층 파괴 물질)
- 금속성 수은,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 포름알데히드, 복합 목재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 아질산염, 특정 절삭유에 사용되는 경우
- 6가 크롬 화합물, 정수 처리에 사용되는 경우
- 2021년에 제한되는 잔류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 물질 5종:
 - PIP 3:1 (CAS 68937-41-7)
 - DecaBDE (CAS 1163-19-5)
 - 2,4,6 TTBP (CAS 732-26-3)
 - HCBd (CAS 87-68-3)
 - PCTP (CAS 133-49-3)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파트가 나열된 물질 두 개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각 항목을 별도 줄에 나열하십시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시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트 번호(들)	설명	TSCA 등재된 물질명(존재하는 경우)	CAS 번호	알려진 경우 농도(w/w%)	면제
A2X33	Plastic Housing	NONE			
SNJ401	Aluminum Mounting Frame	NONE			
PLJ804	Cable Harness	PIP (3:1)	68937-41-7	0.41%	
B15E03	Plastic Standoff	PIP (3:1)	68937-41-7	Unknown	

이름(정자체): _____

서명: _____

제목: _____

날짜: _____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부속 F - PFAS 신고서 템플릿

아래는 PFAS 물질 신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공급 업체가 이 정확한 템플릿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표에 표시된 정보가 요구된다. 표 형식을 사용하여 동일한 신고에 여러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회사 머리말 문구 기입)

회사명:

날짜:

신고서: PFAS

과불화화합물(PFAS)은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이라고도 불리는 수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군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PFAS에 대한 철저한 검토 조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조치나 제안된 조치로 인해 일부 관할권은 PFAS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이나 요건이 부과되는 대상이며, 법적 의무, ESG 책무 및/또는 비즈니스상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트가 나열된 물질 두 개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각 항목을 별도 줄에 나열하십시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시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트 번호(들)	설명	물질명 또는 CAS 번호	중량	농도	부품/제품의 어느 부분에서 해당 물질이 발견되었습니까?
SNJ804	Aluminum Mounting Frame	NONE			
25 111 72	Fuel Line	25190-89-0	5.7	2%	Hose permeation barrier

이름(정자체): _____ 서명: _____

제목: _____ 날짜: _____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부속 G - 포름알데히드 증명 요건

미국 독성 물질 관리법 제 6 호(40 CFR 제 770 부)

복합 목재 제품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최종 규칙의 목적은 미국(수입 포함)에서 판매, 공급, 판매 제안 또는 제조되고 있는 복합 목재 제품 및 이러한 제품을 포함하는 완제품의 포름알데히드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 최종 규칙을 준용하는 복합 목재 제품은 경목 합판, 중질섬유판 및 파티클보드와 이 제품들을 포함하는 완제품을 포함한다.

TSCA 제 6 호는 미국에서 판매, 공급, 판매 제안 또는 제조(수입 포함)되는 복합 목재 제품 및 이러한 제품을 포함하는 완제품의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 소매업자, 패널 생산자, 제작자, 제 3 자 증명자 그리고 인증 기관을 포함하고 이들에 국한되지 않고 적용된다.

<https://www.epa.gov/formaldehyde/formaldehyde-emission-standards-composite-wood-products>

규제 요건 포함 사항:

- 패널 또는 패널 번들에는 패널 생산자의 이름, 제품 번호, EPA TSCA 제 6 호 TPC 번호, 그리고 생산자가 TSCA 제 6 호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문구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
- 완제품 제작자는 생산하는 모든 완제품, 또는 완제품을 담은 모든 상자 및 번들에 라벨을 붙여야 한다.
- 제품 라벨링은 도장, 태그, 또는 스티커로 한다.
- 라벨에는 최소한 읽기 쉬운 영문자, 제작자 이름, 완제품 생산 일자(월/년 형식), 그리고 완제품이 TSCA 제 6 호를 준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해당 송장에는 복합 목재 제품, 성분 부품, 또는 완제품이 TSCA 제 6 호를 준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수입의 경우, 패널 생산자와 복합 목재 제품 생산 일자 확인 요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 규정(SOR/2021-148)

복합 목재 제품 규정으로부터 포름알데히드 배출

이 규정하에, 개인(또는 회사)은 합성 목재 패널 또는 적층 제품, 또는 구성 부품 또는 완제품에 통합된 모든 합성 목재 패널 및 적층 제품으로부터 포름알데히드 배출이 아닌 경우

-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합성 목재 제품을 수입,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해서는 안 된다. 하위 섹션 6(1) 및 6(2)항의 적용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지 마시오
- 해당 사람은 제품 유형에 대한 인증 신고 사본을 보유한다. 그리고
- 해당 사람이 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한도 및 문서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텍스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https://gazette.gc.ca/rp-pr/p2/2021/2021-07-07/html/sor-dors148-eng.html>

캘리포니아 규제 준칙 §93120 ~ 93120.12



REHLKO®
제품 환경 정책
제한 물질 목록
(PEP-RML-001)

복합 목재 제품으로 인한 포름알데히드 배출량 감소를 위한 공기 중 독성 통제 조치(ATCM)

이 공기 중 독성 통제 조치의 목적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판매 제안, 공급,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해 제조되는 복합 목재 제품과 복합 목재 제품을 포함하는 완제품으로 인한 포름알데히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 규제를 준용하는 복합 목재 제품은 경목 합판, 중질섬유판 그리고 파티클보드이다.

ATCM 은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복합 목재 제품과 복합 목재 제품을 포함하는 완제품의 제조자, 유통자, 수입자, 제작자, 소매업자, 그리고 제 3 자 증명자에게 적용된다.

<https://www.arb.ca.gov/toxics/compwood/compwood.htm>

규제 요건 포함 사항:

- Rehlko 공급자/벤더는 공급하는 복합 목재 제품과 완제품이 배출량 적용 기준을 포함하여 제 3 자 증명, 그리고 기록 보존 요건 충족 등의 규제를 준수할 것을 증명해야 한다.
- 각 복합 목재 제품 패널 또는 번들에 배출량 기준 준수 사항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라벨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 제조자 이름,
 - 제품 또는 생산 일괄 번호,
 - 복합 목재 제품이 배출량 기준에 적합하거나 ULEF 또는 NAF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그리고
 - 해당 시, 승인된 제 3 자 증명자의 ARB 배정 번호
- 각 복합 목재 제품 제조자는 선하증권 또는 송장과 함께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당 시, 승인된 제 3 자 증명자의 ARB 배정 번호, 그리고
 - 복합 목재 제품이 배출량 기준에 적합하거나 ULEF 또는 NAF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
- 유통자, 제작자, 그리고 수입자는 완제품에 라벨을 붙여야 한다. (완제품이 유통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다면, 라벨을 추가적으로 붙일 필요가 없다.) 제품의 라벨은 도장, 태그, 스티커 또는 바코드 형식으로 모든 생산 완제품, 또는 완제품을 담고 있는 박스에 붙여야 한다. 라벨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 제작자 이름.
 - 완제품 생산 일자, 그리고
 - 제품이 CARB 2 단계 배출량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
- 유통자, 제작자, 그리고 소매업자는 복합 목재 제품과 복합 목재 제품을 포함하는 완제품이 배출량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문서화해야 한다.
- 요청 시 모든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다.